

2026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민체감형 시범서비스 운영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시민체감형 시범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대구지역 병원 및 시민 이용시설 내 실증·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시장 진출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4.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민체감형 시범서비스 운영사업
- 사업목적 : 시범서비스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신뢰성 확보로 제품의 고도화 및 초기 수요처 확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까지
 - ※ 매년 12월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의 사유로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내용
지원규모	- 참여기업 1개 사(1.3억/년) ※ 총사업비(주관기업+참여기업) : 총 2억원
지원내용	-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시범서비스 적용 - 지역 병원 및 시민 이용시설 내 도입·운영을 통한 제품/사업 고도화 지원 - 시범운영 성과 확산 및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시범서비스 운영에 따른 의료진·시민 만족도 조사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 총괄수행 / 참여기업 : 제품/서비스 실증 및 고도화 - 주관기업은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기선정되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사전협의 필수

2

상세 지원대상 및 자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대구광역시 소재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지사, 연구소 등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 포함 기업 또는 의료제조 포함한 기업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접 보유하여야 함(개인사업자 제외) - 디지털의료·건강지원제품의 의료기관, 연구소, 시민 이용시설 內 도입 10건 이상 가능한 기업 - 의료진/서비스 사용자 등 만족도 조사 수행 가능한 기업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은 보유한 제품/서비스 실증 및 고도화 수행 -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사업수행내용 사전 협의 必 - (필수이행과업) 디지털의료·건강지원 제품의 의료기관, 연구소, 시민 이용시설 內 시범도입 10건 이상 과업이 포함되어야 함 - (필수이행과업) “디지털 의료제품”의 의료진 만족도 및 “디지털 웰니스 제품”의 시민 만족도의 조사 수행을 포함하여야 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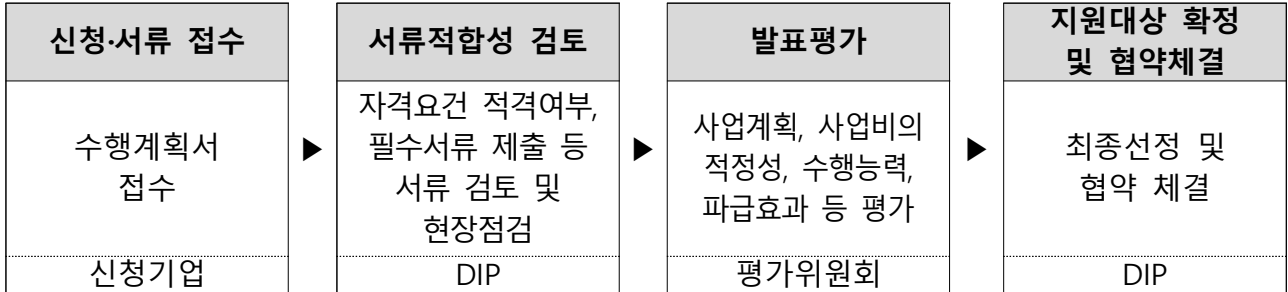
지원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시범서비스 적용 - 지역 병원 및 시민 이용시설 내 도입·운영을 통한 제품/사업 고도화 지원 - 시범운영 성과 확산 및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시범서비스 운영에 따른 의료진·시민 만족도 조사
민간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의 25%(최소 현금비율 10% 이상) 이상 민간부담금)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2억원에 대한 민간 부담금 산정 필요 - 민간 부담금은 사업 수행 시 우선 집행
지원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용 및 정산(부가세 미지원)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은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또는 이월 불가 - 선정 후 과기정통부훈령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이후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적합한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용 및 기간을 달리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평가자 : 지원사업 담당자, 외부전문가(회계사 등)
- 평가항목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등
- 평가기준 : 평가결과 1개 이상 '부' 판정일 경우 선정대상 제외
- 서면평가 기준

	구분	검토내용	제출서류
공통 기준	과제 중복성	과제 중복성 여부	NTIS결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NTIS 검토결과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확약서 등
	회계점검	사전검토기준(붙임1)	재무제표 등
개별 기준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별 자격기준 명시 - 지역소재 IT/SW기업 또는 의료제조 기업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붙임1	서면평가 사전검토기준
------------	--------------------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나.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라.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

- 현장점검 기준

구분	점검내용	여	부
참여인력	- 제출서류 기준 참여인력 일치 여부		
시설 및 개발환경	- 제출서류 기준 기업 소재지 주소 일치 여부		
	- 제출서류 기준 개발환경(장비 및 SW 등) 일치 여부		
보유기술	- 제출서류 기준 보유기술 일치 여부		
종합결과			

○ 발표평가

- 평가자 : 외부전문가 7인 이내(IT/SW 관련 전문가)
- 평가항목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자체평가지표 등
- 평가기준 :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 산술평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 ※ 산술평균이 동일한 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자체성과지표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

- 발표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공통 지표	사업추진 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	사업추진 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역량 - (참여기관) 보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20	2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필수과업 이 행여부) - 디지털 의료제품, 웰니스 제품 서비스 여부 - 디지털 의료제품의 의료진 만족도 조사 이행 여부 - 디지털 웰니스 제품의 시민 만족도 조사 이행 여부 ○ 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연차별 달성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 	15	50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시민체감형 시범서비스의 지역 확산을 위한 노력 ○ 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 	15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의 보유 제품의 차별성 - 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 ○ 상용화 가능성 - 본 사업의 성과를 통한 상용화 및 시장 진입 가능성 	20	
	기대효과	지역 보급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 의료현장(의료진) 생산성·효율성 향상도 - 디지털 헬스케어 시민 체감도, 지역사회 공헌도 	30	30
합 계					100	
우대사항	객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 (최근 3년) 등 (우대사항점수표 기준) 		5	10	
	기술·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보유 기술 및 품질 인증 (우대사항점수표 기준) 		5		
합 계					110	

- 우대사항 점수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객관지표	기업규모 및 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4년도 평균 매출액 대비 '25년도 매출액 증가 : 단, 25년 재무제표가 발행 전일 경우 가결산재무제표 제출 	증가 (3)	유지 (2)	감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간) : 정부과제 수행(동일과제 내용 제외) 	5건 이상 (2)	~3건 이상 (1)	3건 미만 (0)
기술·인증	기술·품질 인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품질 인증(붙임 참고) 	5건 이상 (3)	~3건 이상 (2)	3건 미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최근 3년) 	5건 이상 (2)	~3건 이상 (1)	3건 미만 (0)

붙임2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준

○ 의료기기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GMP	의료기기 GMP 심사	2	의료기기 인·허가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 SW프로세스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SP	SW프로세스 인증	3	CMMI	SW프로세스 인증
2	TMMi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4	SPICE	SW프로세스 인증

○ SW제품 인증 및 기타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GS	SW제품 인증	15	EPC	성능인증제품마크
2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16	모바일접근성	장애인접근성준수
3	ICT융합 품질인증	ICT융합 기술/제품인증	17	KTL마크	ISO25023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4	IOS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18	TTA마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증
5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19	A-SPICE	차량용 SW개발 프로세스 인증
6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20	EMV Level2	스마트카드 결제단말기 응용어플리케이션 인증
7	CC	보안적합성 인증	21	POS	POS단말기 보안기능 시험
8	ISO/IEC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22	GA	개방형 앱세서리 시험인증
9	ISO/IEC25000	SW품질 관련 국제표준 *KOLAS마크 포함	23	TL9000	정보통신품질경영
10	KC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	24	IMS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
11	CE인증	EU 통합규격인증마크	25	PMS	기업경영시스템 역량수준인증
12	FCC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26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3	NEP	신제품인증	27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4	NET	신기술인증			

※ 기타인증은 IT관련 서비스인증(품질경영, 관리체계, 정보보호 등)으로 제한

5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2026. 4. 14. ~2026. 4. 24.(10일)	○(공고개시) www.dip.or.kr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		
선정평가	2026년 4월 4주 ~ 5월 1주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2026년 4월 4주 예정 ○ (발표평가) 2026년 5월 1주 예정
▼		
결과발표 및 협약 체결	2026년 5월	○ 선정기업 결과 안내 및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50%) 지급
▼		
사업수행	2026년 5월~11월	○ 사업수행 및 실증처 실증 ○ 협약기간 : 2026. 5. ~ 2026. 11. 30.
▼		
중간평가	2026년 9월	○ 과제 수행 중간평가(필요시 현장점검) ○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50%) 지급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26년 11월	○ 과제 수행 최종평가(필요시 현장점검) ○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상기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4. 24.(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E-mail(lhg@dip.or.kr)을 통한 서류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DIP 사업담당자 (T. 053-215-3673 / E. lhg@dip.or.kr)
문 의 처	•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담당자 (T.010-3136-0078/ E. ksjune91@kothea.or.kr)
기타사항	• 제출기한 준수 및 초과 시, 절대 접수불가 • 제출서류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감을 필수로 날인해야하며, 날인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제출내용	비 고
① [붙임2] 사업계획서 총 2부 (HWP&PDF)	사업계획서의 경우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② [첨부1]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취합본 각 1부	참여인력 서명 후 제출
③ [첨부2] 청렴서약서 취합본 각 1부	참여인력 서명 후 제출
④ [첨부3] 민간부담금 협약서 취합본 1부	기관 날인 후 제출
⑤ [첨부5]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취합본 1부	기관 날인 후 제출
⑥ [첨부6] 협약서 취합본 1부	기관 날인 후 제출
⑦ [첨부7]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취합본 1부	검색결과 제출
⑧ [첨부8] 제재사항 검색결과 취합본 1부 ※ 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조회하여 제출	기관 검색결과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합본 1부	기관 제출
⑩ 법인등기부등본 취합본 1부	기관 제출
⑪ 최근 3년간(23년~25년) 표준재무제표 취합본 각 1부 ※ 단, 25년 재무제표가 발행 전일 경우 가결산재무제표 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 제외	기관 제출
⑫ 4대보험 가입자명부 취합본 각 1부 ※ 참여인력 근무여부 확인 증빙자료	기관 제출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취합본 각 1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기관 제출
⑭ 정부 및 자체 기술개발 수행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⑮ 기술 및 품질인증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전체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전체서류를 압축하고 '[기업명]디지털헬스케어 시민체감형 시범서비스 운영' 신청서류.zip'으로 작성하여 제출

※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발표평가 PPT 등의 경우 별도 제출 안내)

○ 관련규정

- 동 사업은 본 공고 내용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수행되며,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용

○ 사업비 관리

-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과제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 금액, 이자발생액, 불인정 금액 등은 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상관하지 않고 전액 우리원으로 반납하여야 함

○ 일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하나의 기업(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 과제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조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날인 요망
- 선정된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를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